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51 발의연월일: 2025. 1. 31.

발 의 자: 강득구·김남근·김남희

김병주 · 김성환 · 김준혁

김태선 · 송재봉 · 이광희

임광현 · 정동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군인과 경찰 등 공직자가 상당 기간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 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이나 살인, 강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음.

이에 연금 대상자가 내란, 외환, 살인,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형이 확정될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내란 등 국가안보에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지급 받은 급여를 환수함으로써 자격이없는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 공헌에 따른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(안 제37조 등).

법률 제 호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2항과 제3항"을 "제3항과 제4항"으로 한다.

②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「형법」 제2편제1장(내란의 죄), 제2장(외환의 죄),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(반란의 죄), 제2장(이적의 죄), 「국가보안법」(제10조는 제외한다)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받은 급여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,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.

제65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4장제6절에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5조의2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) ① 이 법을 적용받고 있 거나 적용받을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

- 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「민법」 제 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 니한다.
- 1. 「국가보안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- 2. 「형법」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,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 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- 가. 「형법」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, 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, 제301조의2, 제302조,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, 제332조(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 - 나.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, 제3조제3항 및 제6조(제2조제1항과 제3조제 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 - 다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5조의2,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
 - 라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(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

죄

- 마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제8조 및 제 11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죄
- 바. 「군사기밀 보호법」 제11조, 제11조의2, 제12조, 제13조, 제13 조의2 및 제15조의 죄
- 사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
-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자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급여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)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당시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급여의 환수) ① (생 략)	제37조(급여의 환수) ①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②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
	「형법」 제2편제1장(내란의
	<u>죄), 제2장(외환의 죄), 「군형</u>
	법」 제2편제1장(반란의 죄),
	제2장(이적의 죄), 「국가보안
	법」(제10조는 제외한다)에 규
	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
	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받
	은 급여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
	체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
	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
	<u>가산하여 징수하고, 환수금을</u>
	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
	<u>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
	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.
<u>②</u> 공단은 <u>제1항에</u> 따른 급여	<u>③</u> <u>제1항 및 제2항에</u>
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	
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	
하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	
받아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	

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

<신 설>

- <u>④</u> 제2항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 원은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한) ① ~ ③ (생 략)
 - ④ 재직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 | <삭 제> 제2편제1장(내란의 죄), 제2장 (외환의 죄), 「군형법」 제2편 제1장(반란의 죄), 제2장(이적 의 죄), 「국가보안법」(제10조 는 제외한다)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 액<u>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</u>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 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 	 	 	 	-

-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- ⑤ 제3항과 제4항-----

제65조(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65조(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> 제65조의2(이 법 적용 대상으로 부터의 배제) ① 이 법을 적용 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대상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서 제외하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

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- 1. 「국가보안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- 2. 「형법」 제87조부터 제90조
 까지, 제92조부터 제101조까
 지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
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
 정된 사람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- 가. 「형법」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미수죄,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,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, 제301조의2, 제302조,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, 제332조(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
- 나.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1항, 제3조제3항 및 제6조 (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- 다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 5조의2,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
- 라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

 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

 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

 (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

 죄
- 마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

 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제

 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

 까지에 따른 죄
- 바. 「군사기밀 보호법」 제11조, 제11조의2, 제12조,제13조,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
- 사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95

<u>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</u> 3의 죄

-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자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요 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